

<p>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30조의2(경영평가 및 지도) ①시장은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5. “신축건축물”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후 제4호의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제4조 중 “법 제7조제2항”을 “법 제7조제3항”으로, “시장”을 “시행자”로 한다.</p> <p>제5조제1항 중 “일반주거지역의 기능”을 “주거 기능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6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</p> <p>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7조(공동주택 건설계획)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은 당해 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국·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제3항 중 “참작하여” 다음에 “주거환경개</p>	<p>선계획에서 건축물의”를 추가한다.</p> <p>제12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다만,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8조 중 “건축법 제47조”를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”로 한다.</p> <p>제19조 중 “건축법 제49조제1항”을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”로 하고 “동조 제2항”을 “건축법 제49조제2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20조 중 “건축법 제48조제1항”을 “건축법에서 정하는 지역 및 지구안에서”로 한다.</p> <p>제21조 중 “규정은”을 “규정에 불구하고”로 한다.</p> <p>제25조본문단서 중 “다음 각호의 주차대수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”를 “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하고,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.</p> <p>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그 건축면적 이하”를 “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로 하고, 동조제2항제3호 중 “건축법 제39조의2제1항”을 “건축법 제49조제1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3조(토지의 가격산정 및 매각시기) ①제31조에 의한 연고권자는 개선계획수립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32조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토지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[별표] 중 “신축(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위에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)”을 “신축건축물”로 한다.</p> <p>[별지서식]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삭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</p>
---	--

<p>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지속하기 어려울 때 다섯번째,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發生하게 할 때, 이상과 같은 事由가 있으면 交通部長官은 6月 이내의 期间을 정하여 事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免許 또는 登錄의 일부 또는 전부를 取消할 수 있다고 规定되어 있습니다.</p> <p>同法 第31條의2(課徵金 處分)에는 交通部長官은 自動車 運輸事業者가 法 第31條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同條 本文의 规定에 의한 事業停止 處分에 갈음하여 5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规定되어 있습니다.</p> <p>이상과 같은 根據에 의하여 서울市는 自動車運輸事業者가 同法 第31條에 該當하는 事項이 發生할 경우 同法 第32條의2에 의거 事業停止 處分 대신 5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徵收할 수 있는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를 85年 2月부터 制定하여 運用해 왔습니다.</p> <p>그러나 그 동안 問題가 되고 있는 同條例 第3條第1項에 의거 課徵金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않을 때에는 納付期限을 經過한 날로부터 滯納된 課徵金의 5/10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하여 왔던 것입니다.</p> <p>한편 地方自治法 第15條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事項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고 规定되어 있으므로, 同條例는 課徵金 滯納에 대한 加算金 賦課는 住民에게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이므로 自動車運輸事業法에 구체적으로 委任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.</p> <p>現行法에는 委任이 없으므로 그 동안 서울市에서 運用해 온 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 第3條第1項에 의거 課徵金 滯納者에 대하여 加算金을 賦課한 것은 違法한 것으로 당연히 削除되어야 한다고 判斷, 關聯條例를 改正하게 된 것입니다.</p>
<p>14.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(16時 05分)</p> 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交通委員會所屬 李春洙議員님 나오셔서 審查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李春洙議員 本議員은 交通委員會所屬 李春洙議員입니다.</p> <p>존경하는 白昌鉉 議長님,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</p> <p>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查報告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本 條例改正 理由는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2의 规定에 의한 課徵金을 滯納했을 때 同 條例의 规定에 의하여 滯納課徵金의 5/100에 該當하는 課徵金을 그 동안 賦課해 왔으나, 지난 해 10月末 監査院 監査에서 課徵金 滯納에 대한 加算金 賦課는 違法한 것으로 指摘되었기에, 따라서 條例 第3條第1項에 納付義務者가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않을 때에는 納付期限을 經過한 날부터 滯納된 課徵金의 5/100에 상당한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는 그 规定을 削除코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우리 交通委員會에서는 本 改正條例案을 審查한 結果,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(事業免許 등의 取消 등)에서 自動車 運輸事業者는 이法 또는 이 法에 命令이나 處分 또는 免許 許可나 認可에 부한 條件에 違反할 때, 許可 또는 認可를 얻은 事項을 정당한 事由없이 실시하지 아니할 때, 公共福利에 반하는 行爲를 할 때, 事業經營의 불학실 또는 資產狀態에 현저한 不良 기타 事由로써 事業을</p>	<p>지속하기 어려울 때 다섯번째,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發生하게 할 때, 이상과 같은 事由가 있으면 交通部長官은 6月 이내의 期间을 정하여 事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免許 또는 登錄의 일부 또는 전부를 取消할 수 있다고 规定되어 있습니다.</p> <p>同法 第31條의2(課徵金 處分)에는 交通部長官은 自動車 運輸事業者가 法 第31條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同條 本文의 规定에 의한 事業停止 處分에 갈음하여 5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도록 规定되어 있습니다.</p> <p>이상과 같은 根據에 의하여 서울市는 自動車運輸事業者가 同法 第31條에 該當하는 事項이 發生할 경우 同法 第32條의2에 의거 事業停止 處分 대신 500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徵收할 수 있는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를 85年 2月부터 制定하여 運用해 왔습니다.</p> <p>그러나 그 동안 問題가 되고 있는 同條例 第3條第1項에 의거 課徵金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않을 때에는 納付期限을 經過한 날로부터 滯納된 課徵金의 5/10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하여 왔던 것입니다.</p> <p>한편 地方自治法 第15條에 의해서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事項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고 规定되어 있으므로, 同條例는 課徵金 滯納에 대한 加算金 賦課는 住民에게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이므로 自動車運輸事業法에 구체적으로 委任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.</p> <p>現行法에는 委任이 없으므로 그 동안 서울市에서 運用해 온 自動車운輸事業에關한課徵金徵收條例 第3條第1項에 의거 課徵金 滯納者에 대하여 加算金을 賦課한 것은 違法한 것으로 당연히 削除되어야 한다고 判斷, 關聯條例를 改正하게 된 것입니다.</p>